

광주지방법원 2022. 5. 13 선고 2021나52722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광주지방법원 2022. 5. 13 선고 2021나52722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1. 8 선고 2020가단51834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림

담당변호사 송진경, 양범

피고,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근, 현길환

변론 종결2022. 4. 8.

판결 선고2022. 5. 13.

제1심판결광주지방법원 2021. 1. 8. 선고 2020가단51834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일부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2020. 1. 29.자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2,813,13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채권양도양수계약의 취소 통지를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원상회복에 관하여 가액배상으로 금원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일부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관계

- 1) H은 2015. 1. 20.경 D사의 주지스님인 J과 사이에 D사의 극락전에 봉안시설을 설치하여 수익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봉안당 운영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업무약정서 제7조에는 H이 별도의 봉안사업 운영법인(가칭, F)을 설립하여 전담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 2) H은 2014. 10. 31. 자신의 아들인 G을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 3) H은 2015. 2. 25. 자신의 아들인 K을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K이 C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이후 G은 대표이사에 취임하였고, 현재는 L가 C의 대표이사로 있다.
- 4) H과 J은 2015. 2. 26. D사 극락전의 소유자가 J에서 D사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사업을 전담하는 C이 설립되었음을 이유로 위 제1차 업무약정의 당사자인 H을 C으로, J을 D사로 각 변경하여 위 제1차 업무약정의 모든 내용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업무약정을 다시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차용증, 공정증서의 작성 및 원고의 배당금 수령

1) 원고는 2015. 1. 15.부터 같은 해 2. 20.까지 세 차례에 걸쳐 G에게 합계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015. 1. 15. 50,000,000원 + 2015. 2. 3. 50,000,000원 + 2015. 2. 20. 50,000,000원). 원고는 2015. 6. 30. F, G, H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금전차용증서(갑 제16호증의 2, 을 제2호증)

금액 : 150,000,000원

위 금액을 2015. 2. 10. 채무자 G이 차용(투자) 하였습니다. 이자(배당)는 원금 일억 오천만원(150,000,000원), 배당금 일시금으로 일억 오천만 원(150,000,000원)을 모두 일금 삼억원(300,000,000)을 2015. 6. 30.까지 지급하겠습니다. 단, 변제하지 못할 경우 F(C)에 대한 지분 15%를 제공할 것입니다.

채무자 F 대표 G

연대보증인 H

보증인 M

2) H은 C 및 G을 대리하여 2015. 7. 2. 원고와 사이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I증서 2015년제415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갑 제1호증, 을 제3호증)

제1조(목적) 채권자는 2015. 2. 10. 300,000,000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15. 8. 30.까지 30,000,000원을, 2015. 11. 30.까지 270,000,000원을 각 분할변제기로 한다.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제8조(연대보증)

1. 보증인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2. 보증인의 보증채무 최고액은 600,000,000원이다.

3. 보증채무의 기간은 2026. 2. 10.까지로 한다.

채권자 원고

채무자 주식회사 C 대표이사 G

연대보증인 G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의 대리인 겸 연대보증인 H

3)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청구금액 원금 300,000,000원, 이자 0원)

광주지방법원 N로 C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의 집행관은 2016. 4.

14. C 소유의 봉안함 4,120기를 포함한 유체동산을 압류한 후 호가경매를 실시하였다. 위

유체동산은 경매절차에서 105,120,000원에 매각되었고, 원고는 위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103,191,880원을 배당받았다.

4)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청구금액 원금 196,800,000원, 이자 0원)

광주지방법원 O로 C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의 집행관은 2016. 7.

21. C 소유의 유골함 9개 등을 포함한 유체동산을 압류한 후 호가경매를 실시하였다. 위 유체동산은

경매절차에서 44,750,000원에 매각되었고, 원고는 위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43,477,640원을 배당받았다.

다. C의 처분행위

1) C은 D사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7가합50664(본소), 2018가합53196(반소)호로 부당이득

및 사전구상 청구(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를 하여 2019. 3. 28. 위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았다. 이후 C은 위 판결에 대하여 광주고등법원 2019나21346(본소), 2019나21353(반소)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 22. "D사는 C에게 104,8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4.부터 2020. 1. 2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20. 2. 7. 그대로 확정되었다.

2) C은 2020. 1. 29. 피고와, 위 1)항 기재 판결에 기하여 D사에 대하여 갖는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0. 1. 30. D사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 그 무렵 채권양도 통지가 D사에게 도달하였다.

라. D사의 공탁 및 피고의 공탁금 수령

1) 피고는 광주지방법원 P로 D사 소유의 전남 담양군 Q 토지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2020. 2. 26. 위 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2) D사는 2021. 2. 17.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21년금제674호로 이 사건 채권원리금 및 위 강제경매절차의 집행비용 합계 142,813,134원(= 원금 104,820,000원 + 이자 34,760,034원 + 집행비용 3,153,100원,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고, 피고는 위 공탁금을 출급한 후 2021. 10. 20. 위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 11, 16, 20, 21호증, 을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C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면서도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는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과 피고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공탁금 142,813,134원을 수령함으로써 이 사건 채권을 변제받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사해행위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142,813,1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가액배상을 구한다.

3.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권의 존부에 대한 판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령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364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F(대표이사 G)에 150,000,000원을 투자하였고 수익금을 포함하여 300,000,000원을

변제받기로 하였는데 F이 위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당시 C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던 G에게 요구하여 C 명의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받은 점을 자인하고 있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G이 소외 C 명의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것은 C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고 원고, F 또는 G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행위이며, C 사내이사이자 G에게 C 명의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구한 본인인 원고로서는 G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G의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행위는 대표권 남용행위로서 C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가 된다.

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법인격남용 내지 채무인수 등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C과 F은 사실상 동일하며, C은 F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므로 F의 채권자인 원고는 C에게도 채권행사를 할 수 있고 그 행사의 일환으로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설령 법인격남용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C이 F으로부터 영업을 양수하면서 F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은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인격 남용이 인정하려면 어떤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제로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다른 회사의 도구에 불과하거나 배후에 있는 회사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다10398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이 관음추모원 또는 H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C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제1차 업무약정상의 권리관계를 승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넘어 F으로부터 영업을 양수하면서 F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원고는, 원고의 투자금이 실제로 이 사건 사업에 사용되었고, C은 D사와의 관련사건에서 H, G 및 F 명의로 투입된 비용도 C의 비용으로 청구하면서 이 사건 공정증서 관련 원고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인정한 바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주장을 채무승인에 관한 주장으로 보더라도 원고 주장사실만으로는 C이 원고에 대하여 채무승인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공사비 총 104,820,000원 중 원고가 G에게 돈을 송금한 이후 지출된 비용은 44,320,000원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위 금액을 초과하여 원고가 송금한 돈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C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한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에 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가액배상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성흠

판사김효진

판사김영아

별지